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3. 17.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개발된 콘텐츠의 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지원규모	- 4개 과제(과제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지원내용	- 콘텐츠 고도화에 관련된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개발) 완성된 콘텐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개발비• (브랜딩) 기업 및 개발 콘텐츠 브랜딩을 위한 부대비용(마케팅, 디자인 등)•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자문 및 자료 제작비용, 기업 재무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비용 등• (전시참가) 부스비 및 디자인비 등 부스 설치와 관련된 부대비용(기타 경비 제외)
지원조건	- 기업 비용 선집행 후 검토를 통한 지원금 지급(사후정산) - 신청서 제출 기준 개발완료 또는 완료예정(80% 이상 개발)인 콘텐츠 지원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2026.12.30.) 상용화, 서비스 등 사업화 필수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가산점	- 2025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참여기업

2

지원내용

○ 지원자격 및 조건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4개 과제(과제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지원자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 과제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콘텐츠 기업(본사) ※ 지사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 필수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 colspan="4"><콘텐츠 산업분야></th> </tr> </thead> <tbody> <tr> <td>캐릭터</td> <td>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td> <td>영상</td> <td>영상 기획 및 제작 등</td> </tr> <tr> <td>만화</td> <td>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td> <td>지식정보</td> <td>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td> </tr> <tr> <td>애니메이션</td> <td>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td> <td>콘텐츠솔루션</td> <td>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td> </tr> <tr> <td>실감콘텐츠</td> <td>MR/VR 홀로그래픽 등</td> <td>공연</td> <td>공연기획 및 연출 등</td> </tr> </tbody> </table> <p>※ 상기 분야 이외의 경우 사전문의 후 신청(게임,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p>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솔루션	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공연기획 및 연출 등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솔루션	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공연기획 및 연출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동일 과제로 우리원 및 타 기관에 선정되어 지원금(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 - 컨소시엄 불가 - IP(지식재산권) 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지원항목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의 고도화 및 홍보를 위한 지원만 허용(예시: 기업 홈페이지 구축 X)																					
	추가개발	- 완성된 콘텐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개발비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개발 콘텐츠 브랜딩을 위한 부대비용(마케팅, 디자인 등) - 기업 소개서(포트폴리오), 포스터, 리플렛 등 - 온·오프라인 홍보영상, SNS 마케팅 등 - 자막 번역 등 홍보영상 외국어 번역비 																				
	컨설팅	-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자문 및 자료 제작비용, 기업 재무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비용 등																				
전시회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콘텐츠 관련 전시회 홍보·체험 부스임차 및 부스디자인 비용 지원 																					
제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부가세, 관세, 사후환급 등) - 교통비, 체재비(숙박비, 일비, 식비 등), 인건비, 운영비, 운송비 등 기타 경비 ※ 추가개발 지원 시 콘텐츠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 - 부스 참가비 외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체재비, 해외 운송비, 추가경비 등 편성 불가 - PC 및 전시 장비, 상담용 노트북 및 홍보자료(브로슈어, 기념품 등) 구매 비용 																					
지원조건	개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협약일~26.11.30.) 내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수행 완료 필수 - 지정일까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성과 결과물 증빙 제출 필수 																				
	자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필수 -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 불가(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ex) 지원금 5,000,000원(90%)×자기부담금 556,000원(10%)=총 사업비 5,556,000원 ※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 이행보증보험기간: 협약일 ~2027년 2월 28일(사업종료일 기준 3개월 가산) 																				
	가점사항	- 전년도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최대 1점)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정산(자부담금 10%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 기업 사업비 비용 집행 후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지원금 사후 지급 - 수행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자격제한대상

- 우리원 또는 타 기관에서 유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지원사업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 그 외 부적격 판단 및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5천만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가 연 2회를 초과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공고금액 기준)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공고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2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p>※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p>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시기
사업공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 신청접수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공고: 3. 17.(화) ~ 3. 31.(화) 접수: 3. 26.(목) ~ 3. 31.(화)
서류평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	4. 15.(수)
현장점검	- 선정기업 소재지 실태 및 상근인력 점검 등	4월 중
선정기업 협약	- 선정기업 협약체결	5월 중
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운영 · 콘텐츠 고도화 비용 지출 관리 및 감독 - 선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수행 · 결과 및 정산보고서 작성 	5~11월
과제수행 점검	- 과제 수행 추진을 점검(현장점검 등)	5~11월
사업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기업별 상이
사후관리	- 사업 마무리 및 성과조사	12월 중

[용어설명]

- 총사업비: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사업비 중 진흥원장이 주관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사업비 중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총 사업비의 10% 이상)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수행기업(주관기업)에게 있음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0원'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 사후지급(기업 비용 선집행 후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지원금 지급)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5,000,000원(90%)×자기부담금 556,000원(10%)=총 사업비 5,556,000원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
-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선정 기업 간 거래 불가
 - ※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 문구 삽입 권장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안내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3. 17.(화) ~ 3. 31.(화)
 - 접수기간: 2026. 3. 26.(목) ~ 3. 31.(화) 16:00까지
 -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과제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오프라인 불가)
- 제출서류: 총 2부(PDF 1부, HWP 1부)
 - 제출서류 일체를 1개 PDF 파일로 취합하여 첨부
 - 과제신청서는 한글파일 추가 첨부
 - 제출파일명: [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_기업명.pdf
[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_기업명.hwp
 - ※ 서류 누락 및 파일 오류로 인해 열리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선정 후 원본제출 필수)
-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sakurajm@jcon.or.kr)
- 문의처: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sakurajm@jcon.or.kr)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방식
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한글 1부
	②	참여인력 이력		
	③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동의서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PDF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	
	⑦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필수제출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⑩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 발급 · 최근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서류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	기타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

○ 서류제출방법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 압축파일명(예시): 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_기업명.ZIP

· 압축폴더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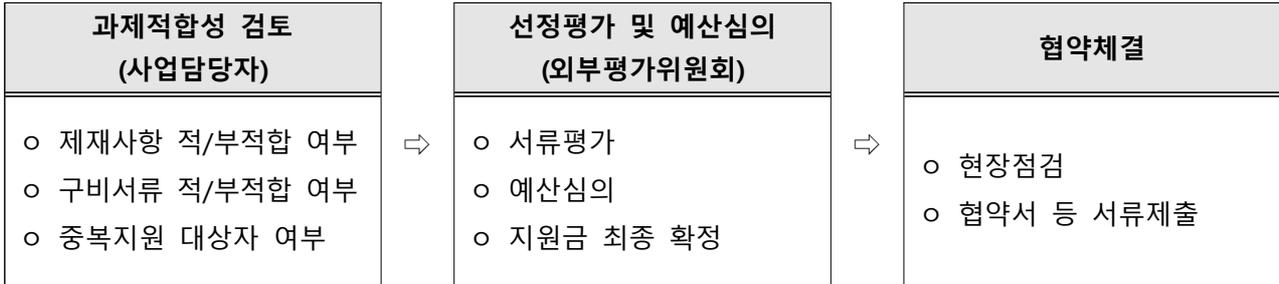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과제 수가 본 사업 지원규모(4개사)보다 적거나 같을 시, 재공고 가능
 ※ 선정(발표)평가는 별도 **추가자료 없이 제출한 과제신청서** 기준으로 평가

○ 사업평가(안)

구 분	평가사항	평가결과
① 적합성 검토	과제 적합성 및 제출서류 검토	적합 대상 서류평가 진행
② 서류평가	제출서류 기반 과제평가	선정과제 대상 예산심의
③ 예산심의	신청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조정
④ 현장점검	사업장 유무 및 과제 참여인력 등 점검	협약체결
⑤ 결과평가	과제시연 및 결과보고서를 통한 최종 수행점검	사업정산에 따른 사업비 사후정산

※ 심사위원 구성: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평가기준(안) ※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적합성 검토기준

구 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① 제재사항	진흥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② 구비서류	과제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③ 중복지원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서류평가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과제 내용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총합의 산술 평균 점수에 가점 적용하여 평가점수 산출
-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적합’, 70점 미만 과제 ‘부적합’
- ‘적합’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콘텐츠경쟁력 (30)	콘텐츠우수성	- 개발된 콘텐츠의 질적 완성 수준 및 우수성	30
	경쟁력	-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사업화역량 (20)	기업전문성	- 기업 콘텐츠 보유 현황 및 기업 성장 잠재력	20
	상용화가능성	- 지원사업을 통한 판로 개척(수요처 확보 등) 가능성	
고도화효율성 (30)	과제이해도	- 고도화 목적,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30
	지원필요성	- 고도화 지원의 필요성 및 목표 실현 가능성	
	유효성	- 고도화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수익화가능성 (20)	사업확장성	- 콘텐츠의 사업화 및 2차 콘텐츠 발전 가능성	20
	수익성	- 상용화를 통해 기대되는 매출 규모 및 신규고용 창출	
합 계			100
가산점 (1)	사업환류	- 전년도(2025년) 콘텐츠코리아랩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창업랩 제작지원, 성장랩 제작지원, 교육생 시제품 제작지원 중)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 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 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 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 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p>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p> <p>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를 초과할 경우</p> <p>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p> <p>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p>	<p>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p> <p>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p> <p>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p>
<p>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p> <p>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p> <p>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p> <p>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p> <p>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p> <p>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p> <p>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p> <p>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p>	<p>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p> <p>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p> <p>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p> <p>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p> <p>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p> <p>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p> <p>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p> <p>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p>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